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김 대 성*

국문요약

이 연구는 영국에서 그동안 입법을 통해 형사배심재판이 열릴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내용과 그 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향후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국에서 형사배심재판은 19세기 초까지 모든 중한 범죄사건과 대부분의 경한 범죄사건들의 재판방식이었다. 그러나 일부 범죄사건에서 치안판사와 피고인에게 재판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이래 그러한 사건의 범위와 치안판사법원의 전속관할사건인 경죄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아울러 최근의 현상으로서 종래 형사사건의 사실심을 모두 배심재판에 의해 처리해온 왕립법원에서도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죄 사건과 배심원 매수의 위험이 있는 사건, 표본소인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배심재판이 제한됨으로써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수는 더욱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영국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는 주로 배심재판제도를 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과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그 중 후자의 요인은 배심재판사건을 축소화하거나 배심재판을 직업법관재판 등의 다른 재판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논의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덧붙이고 있다.

* 인하대학교 BK21 인하지적재산연구 · 교육사업팀 박사후연구원, 법학박사

I. 머리말

일반적인 인식에 의할 때 영국은¹⁾ 오늘날 여러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심제도(jury system)의 기원국가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諸國에서 영국의 법 및 사법제도와 함께 배심제도가 유입되었고 일부 국가는 영국의 배심제도를 모델로 하여 배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식민지에서도 배심제도가 유입되었듯이, 17세기 이래 영국의 배심제도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의 배심제도의 도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²⁾ 최근에도 러시아, 스페인, 일본, 우리나라³⁾ 등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들에서 영국의 배심제도는

- 1)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연합에 의해 구성된 국가이다. 그 중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배심제도와 스코틀랜드의 그것,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그것은 서로 별개이다. 이 글에서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2) Maximus A. Lesse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Jury System*, William S. Hein & Co., Inc., 1992, 154-161면; William Forsyth, *History of Trial by Jury*, 2nd ed., The Lawbook Exchange, Ltd., 1994, 295-313면; 닐 비드마르 편, 김상준/김형두/이동근/이효진 역,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 2007, 645면 이하.
- 3) 러시아에서는 1864년에 처음으로 배심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후 1917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참심제도로 대체되었다가, 1993년에 배심제도가 재도입되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361-372면; Gary S. Gildin, "Trial by Jury in the New Russia: A Travelogue", 15 Dick. J. Int'l L. 151, Fall 1996, 151면 이하; Stephen C. Thaman, "The Resurrection of Trial by Jury in Russia", 31 Stan. J. Int'l L. 61, Winter 1995, 61면 이하 참조). 한편 19세기 초 이래 배심제도의 채택·제한·폐지를 비교적 빈번하게 반복해 온 스페인에서도 1995년에 배심제도가 재도입되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344-360면; Stephen C. Thaman, "Spain Returns to Trial by Jury", 21 Hastings Int'l & Comp. L. Rev. 241, Winter 1998, 241면 이하; Carmen Gleadow, "Spain's Return to Trial by Jury: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actical Results", 2002 St. Louis-Warsaw Transatlantic L.J. 57, 2001/2002, 57면 이하 참조). 그리고 1923년에 배심제도를 도입했다가 1943년에 그 제도의 시행이 정지된 일본에서는 2004년에 참심제도의 요소와 배심제도의 요소를 혼합 및 절충시킨 재판원제도가 채택되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115면 이하; 문준영, "일본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국민의 재판참가의 최근동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제8권, 2001. 12., 132면 이하; 정진수, "일본의 재판원 제도 - 그 성립경위와 주요내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8., 841면 이하 참조).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참심제도의 요소와 배심제도의 요소를 혼합 및 절충시킨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일본의 재판원제도와는 또다른 내용으로 설계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7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여전히 참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배심제도의 기원국가인 영국에서는 시대가 흐를수록 이 제도가 쇠퇴되어가는 경향이 목격된다. 먼저 민사배심제도의 쇠퇴화는 19세기 중·후반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그러한 개혁조치들이 단행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당시에 위의 제도가 예측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재판제도로 인식되었던 점에 있었다.⁴⁾ 1854년에 당해 민사사건을 배심재판이 아닌 직업법관재판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합의를 통한 결정권이 소송당사자들에게 부여되었고, 1873년에는 채권채무관계명세서(accounts)나 서류(documents)에 대한 장기간의 심리가 수행되어야 하거나 과학적인 조사를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을 배심재판에 의해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권이 법관에게 부여되었다. 이어서 1883년에는 여섯 가지 유형의 사건(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악의적 소추, 불법구금, 유괴, 혼인약속의 위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사사건에서 배심재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게 되었다.⁵⁾ 현재 영국에서는 1981년의 법원조직법(Supreme Court Act)에 의거하여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악의적 소추, 불법구금, 사기의 네 가지 유형의 민사사건에 한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배심재판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으며, 전체 민사사건 중 배심재판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⁶⁾

한편 형사배심제도상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서 배심기소제도(grand jury institution)가 폐지되었다. 배심기소제도는 19세기에 이르러서 제도 운용에서 나타난 부패, 비능률성, 고비용 등을 이유로 하여 벤담(Jeremy Bentham)을 비롯한 여러 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어서 20세기 초반에는 배심기소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 및 고조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때마침 그 당시에 영국이 불황기를 맞고 있었던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배심기소제도는 재정을 낭비하는 제도

4) Justin C. Barnes, "Lessons from England's 'Great Guardian of Liberty' :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American Civil Juries", 3 U. St. Thomas L.J. 345, Fall 2005, 358면.

5) Charles W. Joiner, Civil Justice and the Jury, Prentice-Hall, Inc., 1962, 59-60면

6) Catherine Elliott/Frances Quinn, English Legal System, 7th ed.,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6, 200-201면.

로 취급되었다. 그 결과로 이 제도는 1933년의 사법행정법(Administration of Justice (Miscellaneous Provisions) Act)에 의해 폐지되었고,⁷⁾ 이로써 영국에서 형사배심제도는 재판단계에서만 운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래 형사재판에서 배심재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왔고, 오늘날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배심재판에 의해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할 정도로,⁸⁾ 형사배심재판제도에서도 쇠퇴화의 양상은 마찬가지로 엿보인다.

기원국가에서의 배심제도의 쇠퇴 경향은 그 자체로서 관심을 끌 만하다. 그러나 단순히 쇠퇴화의 외관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제도가 왜 쇠퇴되어왔는지, 즉 제도의 쇠퇴화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의 배심재판제도의 쇠퇴화는 배심재판이 열릴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1일에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영역에 국한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다(위 법률 부칙 제1항). 이 글은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의 전개와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이제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향후 운용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에 앞서 먼저 19세기 초까지의 영국 형사배심재판제도의 역사적 전개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영국 형사배심재판제도의 역사

1. 배심제도의 성립과 초기의 형사배심재판제도

오늘날의 배심제도의 기초가 된 모델은 노르만의 일방적 사실조사방법

7) Roger A. Fairfax, Jr., “The Jurisdictional Heritage of the Grand Jury Clause”, 91 Minn. L. Rev. 398, December 2006, 428면; John Hostettler, *The Criminal Jury Old and New: Jury Power from Early Times to the Present Day*, Waterside Press, 2004, 116-117면.

8) Catherine Elliott/Frances Quinn, 앞의 책, 199면.

(Norman inquisition)이었다는 데에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한편,⁹⁾ 영국에서 배심제도가 일련의 제정법을 통해 사법제도로써 확립된 것은 헨리 2세의 치세시기(1154-1189년)의 일이다. 그 최초의 제정법인 1164년의 클래런던 법령(Constitution of Clarendon), 그리고 그 후속법령으로서의 1166년의 클래런던 법령(assise of Clarendon)과 1176년의 노샘프턴 법령(assise of Northampton)이 규정하고 있듯이,¹⁰⁾ 초기의 배심제도는 오늘날의 배심기소제도의 前身에 해당하는 제도로부터 출발하였다.

현재까지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존 왕의 치세시기(1199-1216년)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재산상 대가를 치르면 얻을 수 있는 국왕의 특전에 의해 배심재판이 열리기도 하였는데,¹¹⁾ 이 점에 미루어 볼 때 적어도 13세기 초에는 배심재판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배심재판이 흔하거나 통상적인 재판방식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215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그 해에 당시 교황은 성직자의 신판 참가를 금지시켰다. 따라서 당시에 통상적인 재판방식이었던 신판은 이제 더 이상 신학상의 정당성을 지닐 수 없게 되

9) Douglas G. Smith, "The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Contexts of Jury Reform", 25 Hofstra L. Rev. 377, Winter 1996, 392면; 영국에서 노르만의 일방적 사실조사방법이 이용된 초기의 예는 노르만왕조시대의 돔즈데이 북(Doomsday Book)의 작성과정에서 발견되는데, 이 왕조는 1066년에 영국을 정복한 이후에 국왕의 통치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토지대장의 일종인 돔즈데이 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게 하고 그 진술이 진실임을 선서하도록 했다고 한다. (Patrick Devlin, Trial by Jury, Methuen & Co Ltd, 1966, 5-6면).

10) 1164년의 법령은 "속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은 주교의 면전에서 적법한 고발자 및 증인에 의해야 하고, 그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고발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는 주교의 요구에 의해 행정관(sheriff)이 인근의 12인의 적법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이에 관해 진실을 선언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166년의 법령은 "각 백호(hundred)당 12인 및 각 읍구(township)당 4인의 적법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한 다음에 당해 지역에 강도범이나 살인범, 절도범 또는 이들을 은닉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1176년의 법령은 "살인이나 절도 또는 강도의 혐의, 이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한 혐의, 또는 통화위조나 방화의 혐의로 각 백호당 기사(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자유민) 12인 및 각 읍구당 4인의 선서에 의해 고발된 자는 神判(ordeal)을 받도록 하고, 만일 신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의 수족을 절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Maximus A. Lesser, 앞의 책, 137-140면).

11) William Forsyth, 앞의 책, 166면.

었고, 이를 대체할 만한 재판제도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런데 결투나 선서와 같은 당시의 다른 재판방식들은 특히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의 입증에 있어서의 불공정성과 비합리성, 임의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결투는 마침 당시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사인소추 사건에 대한 재판방식이었기 때문에, 배심재판이 신판을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판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존 왕이 승인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짐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의와 재판을 팔지 아니하며, 또한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와 재판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한다”는 규정(제40조)으로써 배심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당시의 관행을 철폐시켰다. 아울러 당시에 배심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국왕의 입장에서 배심재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재판방식이었다.¹²⁾

이러한 배경 하에서 1215년 이후에 영국에서 배심재판은 형사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재판방식이 되었다. 이어서 1275년에 공포된 제1차 웨스트민스터 법령(Statute of Westminster I)은 배심재판을 거부하는 중죄 혐의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¹³⁾ 형사 배심재판제도에 강제적 성격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초기의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성격이 능동적인 증거조사·수집자 내지 증인에 가까웠고, 배심원단은 법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¹⁴⁾

12) J. S. Cockburn/Thomas A. Green (eds.), *Twelve Good Men and True : The Criminal Trial Jury in England, 1200-180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10-18면; Clay S. Conrad, *Jury Nullification : The Evolution of a Doctrine*, Carolina Academic Press, 1988, 17면; Douglas G. Smith, 앞의 논문, 394-395면; James Fitzjames Stephen,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 Vol. I., Macmillan and Co., 1883, 254면.

13) Maximus A. Lesser, 앞의 책, 146면.

14) 배심원들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직접 조사 및 수집하였고, 법관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자의적으로 파기하거나 배심원들에게 평결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거나 심지어 평결을 이유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기까지 하였던 바, 법관은 배심원단과 평결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였다(Douglas G. Smith, 앞의 논문, 408면, 412면, 416-417면).

2. 형사배심재판제도의 발전

배심원단이 수동적이고 공평한 사실판정자로서, 그리고 법관에 대해 독립적인 합의체로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배심재판제도로 변모한 것은 17세기 말경으로 보인다. 먼저 배심원들의 주요 역할이 증거의 조사·수집에서 사실판정으로 전환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첫 번째 요인은 1367년에 전원의견일치제(unanimity)가 평결성립의 표결요건으로서 확립된 점에 있다. 전원의견일치제 하에서 배심원들이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진술하거나 조사·수집한 증거를 현출하는 일보다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배심원단의 평결을 산출하는 일이 보다 중시되고 따라서 평의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배심원이 아닌 자가 증인으로 등장하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로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⁵⁾ 그 두 번째 요인은 15세기 이후에 전개된 법집행과 형사소추 업무의 전문·직업화였다. 영국에서의 전통적인 형사소추방식인 사인소추는 점차 공공소추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치안판사들(justices of the peace)이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법정에서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배심원들의 역할은 증거의 조사와 수집에서 점차 멀어져 간 것이다.¹⁶⁾

한편 배심원단이 법관에 대해 독립적인 합의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계기는 1670년의 부셸(Bushell)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불법집회와 소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웨이커교도 펜(William Penn)과 미드(William Mead)에 대한 재판에서 비롯되었다. 이 재판에서 담당법관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기를 번번이 거부하였고, 결국 배심원들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전액을 납입할 때까지 감옥에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시 배심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부셸은 자신들에 대한 감금과 처벌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15) Douglas G. Smith, 앞의 논문, 397면, 418면; S. H. Bailey/M. J. Gunn, Smith and Bailey on the Modern English Legal System, Sweet & Maxwell, 1996, 889면.

16) Clay S. Conrad, 앞의 책, 20-21면; Antonio Padoa Schioppa (ed.), The Trial Jury in England, France, Germany 1700-1900, Duncker & Humblot, 1987, 44면.

corpus ad subjiendum)을 제출하였다. 이 영장을 심리한 당시 민사법원(Court of Common Pleas)의 수석법관 보간(Vaughan)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이유로 배심원들을 처벌하거나 처벌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로 인하여 비로소 법관이나 통치권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는 ‘자유의 보루’로서의 배심원단의 지위가 확립되었다.¹⁷⁾

18세기와 19세기 초까지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중한 범죄사건과 대부분의 경한 범죄사건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배심원단에 의해 심리되었다.¹⁸⁾

III.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입법의 전개

1. 재판방식의 선택제 채택

영국에서 형사배심재판사건이 감소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입법을 통해 일부 사건에서 치안판사와 피고인에게 재판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1855년의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은 피해가액이 10실링 이하인 단순절도죄(simple larceny) 사건에서 재판방식의 선택제를 채택하였다. 즉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전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치안판사들의 합의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에 의해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서, 1855년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5년간을 비교했을 때 배심재판 사건의 감소율은 무려 34.9%에 달했다. 이어서 1879년의 약식재판관할법(Summary Jurisdiction Act)은 전술한 피해가액을 10실링 이하에서 40실링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 결과로서 배심재판 사건의 비율은 또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¹⁹⁾

17) Clay S. Conrad, 앞의 책, 24-28면; Douglas G. Smith, 앞의 논문, 408면.

18) Antonio Padoa Schioppa (ed.), 앞의 책, 16-17면; John Hostettler, 앞의 책, 118면.

19) John Hostettler, 앞의 책, 119-120면.

나아가 1977년의 형법(Criminal Law Act)과 1980년의 치안판사법원법(Magistrates' Courts Act)은 범죄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면서 아예 선택가능중죄(offence triable either way)라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이전에는 배심재판에 의해서만 심리될 수 있었던 중한 범죄들의 상당수를 포함시켰다. 이 범죄유형은 가장 중한 범죄와 가장 경한 범죄 사이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범죄들의 묶음이며, 그 재판방식은 치안판사와 피고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²⁰⁾ 오늘날 선택가능중죄에 속하는 개별범죄의 수는 약 700개이며, 대부분의 선택가능중죄 사건들은 배심재판이 아니라 치안판사의 재판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²¹⁾

2. 치안판사법원의 관할 확대

1977년의 형법(Criminal Law Act)이 제정된 이래 영국에서 범죄는 경죄(summary offence)와 선택가능중죄(offence triable either way), 중죄(offence indictable only)로 분류된다. 이는 범죄의 輕重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해당 범죄사건의 처리절차 및 재판방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경죄는 정식기소(indictment) 없이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2인 또는 3인의 치안판사들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재판을 행하는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중죄는 정식기소에 기하여 왕립법원(Crown Court)에서 배심재판이 행해지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각각 처리된다. 그리고 선택가능중죄는 치안판사와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서 약식재판절차와 정식재판절차 그 둘 중 하나의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²²⁾

그동안 영국에서는 치안판사법원의 관할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1925년에는 이전에 배심재판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었던 다수의 사건들이 치안판사법원의 전신인 간이재판소(petty sessions)의 치안판사의 관할이 되었다.²³⁾ 또한 1977년의 형법(Criminal Law Act)에 의해 일

20) S. H. Bailey/M. J. Gunn, 앞의 책, 721-724면.

21) 예컨대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선택가능중죄 사건 중에서 치안판사의 재판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무려 87%에 달했다(John Hostettler, 앞의 책, 128면).

22) Catherine Elliott/Frances Quinn, 앞의 책, 369-370면; Sally Lloyd-Bostock/Cheryl Thomas, "Decline of the 'Little Parliament' : Juries and Jury Reform in England and Wales", 62-SPG Law & Contemp. Probs., Spring 1999, 15면.

부 공공질서범죄와 피해액 200파운드 미만의 손괴죄(criminal damage)가 경죄로 분류됨으로써²⁴⁾ 치안판사법원의 관할이 확대되었다. 이어서 1988년의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은 차량절도죄(taking motor vehicle or other conveyance without authority)와 단순폭행죄(common assault and battery)를 경죄로 분류시키고 손괴죄 또는 손괴죄와 연관된 범죄가 경죄로 분류되는 피해액의 기준을 4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²⁵⁾ 치안판사법원의 관할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와 같이 경죄의 범위를 늘려서 치안판사법원의 관할을 확대시킨 것은 곧 배심재판 사건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왕립법원에서의 배심재판의 제한

종래 왕립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사실심은 모두 배심재판으로 행해져왔다. 그런데 최근 입법을 통해 왕립법원에서조차도 배심재판이 제한됨으로써 위의 전통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그 제한의 골자는 설령 배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배심원단의 참여가 배제된 재판에 의해 심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죄 사건

2003년의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은 배심재판의 대상사건 중에서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죄 사건(serious or complex fraud case)’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²⁶⁾ 위의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은 왕립법원의 판사에게 당해 사건

23) John Hostettler, 앞의 책, 127면.

24) Criminal Law Act 1977, s. 15, s. 22, sched. 4.

25) Criminal Justice Act 1988, ss. 37-39.

26) Criminal Justice Act 2003, s. 43; 다만 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Criminal Justice Act 2003, s. 330(5)) 그 시행일은 내무부장관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Criminal Justice Act 2003, s. 336(3)), 아직까지는 그 시행여부 및 시행일이 미정상태에 있다.

의 배심원단의 참여가 배제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기하여 그 사건이 소정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항소법원 형사수석재판장(Lord Chief Justice) 또는 그가 지명한 판사의 승인을 얻어서 왕립법원의 판사는 위의 재판을 지시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소정의 조건이란 당해 재판의 복잡성이나 소요시간이 그 재판을 심리하게 될 배심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사법의 이익상 그 재판이 배심원단 없이 행해져야 하는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때에 판사는 당해 재판의 복잡성이나 소요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여하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왕립법원의 판사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의 참여가 배제된 재판이 열리고, 재판결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유죄선고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²⁷⁾

나. 배심원 매수의 위험이 있는 사건

아울러 2003년의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은 배심재판의 대상 사건 중에서 ‘배심원 매수(jury tampering)의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그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⁸⁾ 위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왕립법원의 판사에게 당해 사건의 배심원단의 참여가 배제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기하여 그 사건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왕립법원의 판사는 위의 재판을 지시해야 한다. 여기서 그 첫 번째 조건은 배심원 매수가 발생할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a real and present danger)의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조건은 배심원 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여하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법의 이익상 당해 재판이 배심원단 없이 행해질 것을 불가결하게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3년의 형사사법법 제44조는 배심원 매수가 발생할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의 예로서 i) 당해 재판이 재심(retrial)이고 이전 재판에서 배심원 매수가 발생한 것을

27) Criminal Justice Act 2003, s. 48(5)(a).

28) Criminal Justice Act 2003, s. 44; 이 규정은 200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유로 하여 배심원단이 해산된 경우, ii) 당해 피고인 또는 당해 피고인들 중 일부가 연루된 이전의 형사절차에서 배심원 매수가 발생했던 경우, iii) 당해 재판에서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협박 또는 협박 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왕립법원의 판사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의 참여가 배제된 재판이 열리고, 재판결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유죄선고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²⁹⁾

다. 표본소인이 존재하는 사건

가장 최근의 입법으로서 2004년의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은 標本訴因(sample count)이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배심재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이 법률에 의하면 검찰은 왕립법원의 판사에게 정식기소에 기한 재판이 그 기소장에 기재된 소인들³¹⁾ 중 일부 소인에 대한 재판을 배심원단이 배제된 재판에 의할 수 있음을 기초로 하여 열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청에 기하여 당해 사건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29) Criminal Justice Act 2003, s. 48(5)(a).

30)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s. 17; 이 규정은 200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31) 영국에서 기소장의 양식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표제(the commencement)”이다. 이 부분은 기소장의 맨 위에 기재되는 것으로서, 먼저 문서번호가 표기되고, 그 아래에 “INDICTMENT”라는 문구가 표기되며, 그 아래에 당해 재판의 관할 법원과 당사자가 표기된다. 두 번째 부분은 “범죄항목(the statement of offence)”이다.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죄명이 기재되는데, 이때 그 죄명은 보통법(common law)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고 제정법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으며,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죄명과 더불어 그 제정법의 명칭과 적용조항까지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 부분은 “범죄사실(the particulars of the offence)”이다.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해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된다. 그 중 “범죄항목”과 “범죄사실”이 訴因(count)의 구성요소이다. 하나의 기소장에는 하나의 소인만이 기재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소인들이 기재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각 소인들에서의 “범죄사실”들이 i) 동일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거나, ii)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성격(character)을 지닌 일련의 범죄들의 전부 또는 일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Stephen Seabrooke/John Sprack, Criminal Evidence and Procedure : The Statutory Framework, Blackstone Press Limited, 1996, 258-265면; S. H. Bailey/M. J. Gunn, 앞의 책, 847-848면).

판단하면 왕립법원의 판사는 그러한 재판을 지시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조건은 당해 기소장에 기재된 소인들의 수가 그 모든 소인에 대한 배심재판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할 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검찰의 신청에 기한 왕립법원의 판사의 지시에 따라 배심 재판에 의해 심리될 각 소인 또는 소인들의 집단이 배심원단이 배제된 재판에 의해 심리될 소인들의 표본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왕립법원의 판사는 사법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왕립법원의 판사가 그러한 재판을 지시하고 표본소인에 대한 배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그 나머지 소인들에 대해 배심원단이 배제된 재판이 열릴 수 있다.³²⁾ 그리고 이 배심원단이 배제된 재판의 결과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유죄선고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³³⁾

IV.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입법의 요인과 평가

1. 배심재판제도의 고비용에 대한 부담

영국에서 원래 배심재판제도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먼저 초기시대에는 일단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다수의 사건들의 재판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배심원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오늘날에 비해 배심원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의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또한 배심원들은 재판참가의 경험이 많았고 그만큼 재판절차에 익숙하고 재판업무의 수행에 능숙했기 때문에, 배심재판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다.³⁴⁾ 게다가 1949년 이전까지는 배심원들에게 그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³⁵⁾

32)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s. 19(1).

33)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s. 19(4)(a).

34) John H. Langbein, "The Criminal Trial Before the Lawyers", 45 U. Chi. L. Rev. 263, 1978, 276면; Douglas G. Smith, 앞의 논문, 397-398면.

35) John Hostettler, 앞의 책, 126면.

그러나 오늘날의 배심재판제도는 특히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의 면에서 고비용의 제도이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하나의 사건의 재판에만 참가하고, 과거 2년 내에 배심원으로서 배심재판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배심원선정을 위한 소환절차에 따라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는 시민은 배심재판절차에의 참가가 면제됨으로써,³⁶⁾ 재판참가의 경험이 풍부한 배심원과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진행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시대가 흐를수록 형사사건이 보다 복잡해지고 배심원선정절차를 포함한 배심재판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정교해짐에 따라 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장기화되었다. 게다가 1949년 이래 배심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수가 지급되어왔고,³⁷⁾ 이 점이 배심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의 장기화와 결합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1999년에 발표된 영국 내무부의 통계에 의할 때 배심재판의 비용은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의 비용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³⁸⁾ 이러한 배심재판제도의 고비용에 대한 부담은 영국에서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가 추진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³⁹⁾

2.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대한 회의

가. 제 보고서의 견해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법률전문가 내지 법률업무종사자가 아니기 마련이다.⁴⁰⁾ 배심원들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36) Juries Act 1974, s. 8.

37) 현재 배심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해서는 1974년의 배심법(Juries Act)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8) 닐 비드마르 편, 앞의 책, 118면, 각주 67.

39) Catherine Elliott/Frances Quinn, 앞의 책, 199면; John Hostettler, 앞의 책, 125면, 131면; Patrick Devlin, 앞의 책, 144-146면; Peter Duff, "The Defendant's Right to Trial by Jury : A Neighbour's View", Crim. L.R. 2000, FEB, 85-94, 87-88면; 닐 비드마르 편, 앞의 책, 118면.

40) 영국에서는 원래 범조인들이 배심원선정에서 제외되었지만, 2003년의 형사사법법에 의해 현재 이들도 배심원선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범조인구 비율에 미루어 볼 때, 실제로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시민들은 여전히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아

문제는 주로 그러한 이유에서 종래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동안 영국 정부 또는 대법원의 기획 하에 작성·발표된 보고서들은 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의 형사사법법에 의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죄 사건에서 배심재판이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먼저 정부의 특별연구위원회의 하나인 사기죄재판위원회(Fraud Trials Committee)가 작성하여 발표한 1986년의 로스킬 보고서(Roskill Report)는 복잡하고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 배심재판은 부적절한 재판방식이라고 결론지었다. 위 보고서가 그에 대한 근거로 든 것은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의 배심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⁴¹⁾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검찰이 기소를 보류하거나 단순한 소인으로 좁혀서 기소하는 예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 중대한 사기죄 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아울러 위 보고서는 배심재판대신에 판사 1인과 그 분야의 일반인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는 사기죄특별재판부(Fraud Trials Tribunal)를 창설하여 그러한 사건을 이 재판부에 의해 심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⁴²⁾

대법원장(Lord Chancellor)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어 발표된 2001년의 올드 보고서(Auld Report) 역시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 여전히 재판소요시간이 길고 복잡하다는 점, 점점 더 전문화·국제화되어가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죄 사건에서 배심재판을 다른 유형의 재판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로스킬 보고서의 논지에 찬동하였다.⁴³⁾ 아울러 위의 보고서는 그 다른 유형의 재판방식으로서 판사에게 판사와 그 분야의 일반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의한 재판의 지시권과 피고인이

닐 것으로 판단된다.

41) 이 보고서는 “매우 복잡한 사기죄 사건은 배심원들의 이해력의 한도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Robert F. Julian, “Judicial Perspectives on the Conduct of Serious Fraud Trials”, *Crim. L.R.* 2007, OCT, 751-768, 751면).

42) 대검찰청, 각국의 국민 형사재판참여 제도: 영국, 2005, 168-169면; 닐 비드마르 편, 앞의 책, 123면.

43) Robin Auld, *Review of the Criminal Courts of England and Wales*, London, HMSO, 2001, 204면 (<http://www.criminal-courts-review.org.uk/chpt5.pdf>에서 열람하였음).

선택하는 경우에 판사의 단독재판의 지시권을 부여할 것과, 판사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⁴⁴⁾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죄 사건에서 배심재판을 제한하고 있는 2003년의 형사사법법의 규정은 바로 이 권고안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2년의 정부 백서(White Paper)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죄 사건에서 배심재판을 제한해야 한다는 로스킬 보고서와 올드 보고서의 논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다만 위의 백서는 판사와 일반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일반인 전문가의 재판참가가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적합한 일반인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특히 그들에게 상당한 시간손실을 부담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재판부에 의한 재판보다는 직업법관재판에 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⁴⁵⁾

나. 관련 연구의 반론

먼저 최근에 영국에서 배심제도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1990년대의 대표적인 두 사건, 즉 맥스웰(Maxwell) 사건과 주빌리선(Jubilee Line) 사건을 제재로 삼은 연구들이 있다. 전자는 회사의 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맥스웰 형제에 대한 배심재판 사건으로서, 법원에서의 배심원선정절차가 2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재판결과 배심원단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⁴⁶⁾ 그리고 후자는 런던의 지하철노선인 주빌리선의 확장공사 계약과 관련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6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심재판 사건으로서, 21개월 동안이나 계속된 재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심원단은 어떠한 평결에도 이르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⁴⁷⁾

44) Robin Auld, 앞의 보고서, 213-214면(<http://www.criminal-courts-review.org.uk/chpt5.pdf>에서 열람하였음).

45) T. M. Honess/M. Levi/E. A. Charman, "Juror Competence in Serious Frauds since Roskill : A Research-Based Assessment", J.F.C. 2003,11(1), 17-27, 17-18면.

46) 닐 비드마르 편, 앞의 책, 124면, 130면.

47) Sally Lloyd-Bostock, "The Jubilee Line Jurors : Does Their Experience Strengthen

이 두 사건은 모두 배심재판절차의 소요시간 및 비용, 그리고 특히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 면에서의 문제점에 기초한 배심제도개혁론의 좋은 예증으로 이용되어왔다.

맥스웰 사건에 대한 모의실험을 기초로 한 한 연구는 그와 같은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증거이해력에 중점을 두면서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모의실험에서는 가능한 한 실제의 배심재판절차에 가까운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 사건의 재판에서의 공소사실의 사본과 배심원단에 대한 판사의 사건개요설명, 검사와 변호인의 각 모두진술·주요논거·증거를 기초로 하여 6시간 분량의 재연 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이 비디오가 모의배심원들에게 상영되었다. 그리고 배심원들에게는 증거의 요약, 평결의 제출, 그 평결에 대한 신뢰도의 보고, 그 평결에 대한 이유의 제시가 주문되었다.⁴⁸⁾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모의배심원들 중 80% 정도가 중대한 사기죄 사건에서 재판업무 수행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위 연구는 배심원선정절차의 소요시간이 길수록 보다 역량있는 배심원후보자들이 배심원선정에서 탈락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면서, 배심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배심원선정절차에서의 탈락인원수의 최소화, 무작위로 선정되고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자술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심사의 자제, 양질의 증거현출기법의 개발, 핵심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숙지를 위한 배심원들 간의 상호 사전설시(pre-instruction)를 권고한다.⁴⁹⁾

그리고 주빌리선(Jubilee Line) 사건을 제재로 삼은 한 연구는 이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가한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을 분석하였다. 이 사건에서 배심재판이 결렬되고 배심원단이 해산될 당시에 배심원의 수는 10명이었다. 재판절차의 계속 중에 여성배심원 1명이 임신을 이유로 사임하였고, 다른 남성배심원 1명은 출석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에서의 인터뷰는 그 10명의 배심원들과 재판절차의 계속 중에 사임했던 그 여성배심원을 대상

the Argument for Judge-Only Trial in Long and Complex Fraud Cases”, *Crim. L.R.* 2007, APR, 255-273, 255면; Catherine Elliott/Frances Quinn, 앞의 책, 219면.

48) T. M. Honess, “Juror Competence in Processing Complex Information : Implications from a Simulation of the Maxwell Trial”, *Crim. L.R.* 1998, NOV, 763-773, 765-766면.

49) T. M. Honess, 앞의 논문, 771-772면.

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⁵⁰⁾ 인터뷰를 한 배심원들 모두는 그들이 그 사건에서 현출된 증거에 대해 매우 잘 이해했다는 견해를 확고하게 밝혔으며, 그들이 증거와 증인에 대해 서로 빈번하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배심원단의 그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답변하였다.⁵¹⁾ 그리고 위의 연구는 주빌리선 사건에서의 문제점은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이 아니라, 재판절차 진행 동안의 배심원들에 대한 법원의 처우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소요된 재판시간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⁵²⁾

한편 다른 한 연구는 법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법관들은 9명이었고, 모두 중대한 사기죄 사건의 배심재판에 참가하여 재판장으로서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인터뷰의 결과 우선 각자 자신이 참가한 그러한 사건의 배심재판에서 법관의 개인적 판정과 배심원단의 평결 간의 일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³⁾ 그리고 그 법관들은 모두 그러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상당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음을 긍정하였다.⁵⁴⁾ 위의 연구는 결론적으로 그 법관들이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성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중대한 사기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참여하는 법조인들의 노력에 따라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도가 향상되리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⁵⁾

3. 평가

사법비용은 특히 정부 및 사법행정당국에게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기 마련이다. 게다가 사법비용 및 사법의 효율성은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미치는 것이다. 배심제도는 종종 ‘자유의 보루’, ‘민주적 사법제도’ 등의 찬란한 문구가 인용되면서 훌륭한 사법제도

50) Sally Lloyd-Bostock, 앞의 논문, 258-259면.

51) Sally Lloyd-Bostock, 앞의 논문, 259-261면.

52) Sally Lloyd-Bostock, 앞의 논문, 273면.

53) Robert F. Julian, 앞의 논문, 754-757면.

54) Robert F. Julian, 앞의 논문, 757-758면.

55) Robert F. Julian, 앞의 논문, 768면.

로 평가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제도의 운용에는 분명히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제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경제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 정부 또는 대법원의 보고서들은 특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는 2003년의 형사사법법을 통해 형사배심재판의 사건범위가 한층 더 제한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들에서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문제없이 처리하기에는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조사연구와 같은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비록 조사의 범위가 크지 않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모의실험과 실제 배심재판참가의 경험이 있는 시민들 및 법관들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한 경험적 조사연구들의 논지가 보다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연구들에서의 일관된 논지는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재판업무 수행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법원이나 당해 사건에 관여하는 법조인들이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한다면 이 문제가 충분히 완화 또는 해결될 수 있거나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이 배심재판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배심재판을 직업법관재판 등의 다른 재판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영국에서 입법을 통한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추진은 결국 ‘배심재판제도의 운용에 소요되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의 논의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향후 운용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제도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히 국민참여재판사건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나 심지어 제도의 존폐의 갈림길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비용의 절감 또는 제도운용의 경제적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배심원선정절차에⁵⁶⁾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법원 또는 당해 사건에 관여하는 법조인들이 배심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절차의 전체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국민참여재판사건의 범위를 조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영국의 논의에서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어온 사기죄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⁵⁷⁾ 그러나 위의 법률이 ‘법원조직법상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그 대상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듯이, 사기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유형들이 향후에 그 대상사건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은 그와 같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시행으로부터 5년간의 제도의 시험운영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⁵⁸⁾ 위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대상사건 중에 중대하거

5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에 대해 “배심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법률 제2조). 위의 법률에 의거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형적인 배심제도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주로 이 용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친숙함 때문이라고 설명된다(이에 대해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http://www.pcj.go.kr/files/국민의형사재판참여\(설명자료\).hwp](http://www.pcj.go.kr/files/국민의형사재판참여(설명자료).hwp) 참조).

57) 이 법률 제5조 참조.

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 중에 열린 대체토론에서 당시 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헌법적합성과 관련하여 ‘향후 5년 정도 시행 후 배심 또는 참심제도를 결정하고 헌법개정문제 논의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위 제도

나 복잡한 실제 사건에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사기죄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규정하여 실제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들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사법참여기획단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되어야 할 것이다.⁵⁹⁾ 아울러 위의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들의 의견과 배심원단의 평결에는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작업이나 기타 시도해 볼 만한 관련 실험들은 크게 무리가 따르거나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의 배심원의 재판업무 수행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시사하듯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과 법조인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 노력은 특히 배심원들이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 또는 완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사건의 본질과 증거를 제대로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닐 비드마르 편, 김상준/김형두/이동근/이효진 역,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 2007.
- 대검찰청, 각국의 국민 형사재판참여 제도 : 영국, 2005.
- 문준영, “일본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국민의 재판참가의 최근동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제8권, 2001. 12.
-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의 시행준비와 관련하여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5년 정도 시험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95쪽, 97쪽; 이 보고서는 국회 사이트 내의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음(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2954)).

5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대법원 산하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법참여기획단을,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55조).

정진수, “일본의 재판원 제도 - 그 성립경위와 주요내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8.

Antonio Padoa Schioppa (ed.), *The Trial Jury in England, France, Germany 1700-1900*, Duncker & Humblot, 1987.

Carmen Gleadow, “Spain’s Return to Trial by Jury :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actical Results”, 2002 St. Louis-Warsaw Transatlantic L.J. 57, 2001/2002.

Catherine Elliott/Frances Quinn, *English Legal System*, 7th ed.,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6.

Charles W. Joiner, *Civil Justice and the Jury*, Prentice-Hall, Inc., 1962.

Clay S. Conrad, *Jury Nullification : The Evolution of a Doctrine*, Carolina Academic Press, 1988.

Douglas G. Smith, “The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Contexts of Jury Reform”, 25 Hofstra L. Rev. 377, Winter 1996.

Gary S. Gildin, “Trial by Jury in the New Russia : A Travelogue”, 15 Dick. J. Int’l L. 151, Fall 1996.

James Fitzjames Stephen,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 Vol. I, Macmillan and Co., 1883.

John H. Langbein, “The Criminal Trial Before the Lawyers”, 45 U. Chi. L. Rev. 263, 1978.

John Hostettler, *The Criminal Jury Old and New : Jury Power from Early Times to the Present Day*, Waterside Press, 2004.

J. S. Cockburn/Thomas A. Green (eds.), *Twelve Good Men and True : The Criminal Trial Jury in England, 1200-180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Justin C. Barnes, “Lessons from England’s ‘Great Guardian of Liberty’ :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American Civil Juries”, 3 U. St. Thomas L.J. 345, Fall 2005.

Maximus A. Lesse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Jury System*, William S. Hein & Co., Inc., 1992.

- Patrick Devlin, *Trial by Jury*, Methuen & Co Ltd, 1966.
- Peter Duff, "The Defendant's Right to Trial by Jury : A Neighbour's View", *Crim. L.R.* 2000, FEB, 85-94.
- Robert F. Julian, "Judicial Perspectives on the Conduct of Serious Fraud Trials", *Crim. L.R.* 2007, OCT, 751-768.
- Robin Auld, *Review of the Criminal Courts of England and Wales*, London, HMSO, 2001.
- Roger A. Fairfax, Jr., "The Jurisdictional Heritage of the Grand Jury Clause", 91 *Minn. L. Rev.* 398, December 2006.
- Sally Lloyd-Bostock, "The Jubilee Line Jurors : Does Their Experience Strengthen the Argument for Judge-Only Trial in Long and Complex Fraud Cases", *Crim. L.R.* 2007, APR, 255-273.
- Sally Lloyd-Bostock/Cheryl Thomas, "Decline of the 'Little Parliament' : Juries and Jury Reform in England and Wales", 62-SPG *Law & Contemp. Probs.*, Spring 1999.
- S. H. Bailey/M. J. Gunn, *Smith and Bailey on the Modern English Legal System*, Sweet & Maxwell, 1996.
- Stephen C. Thaman, "The Resurrection of Trial by Jury in Russia", 31 *Stan. J. Int'l L.* 61, Winter 1995.
- Stephen C. Thaman, "Spain Returns to Trial by Jury", 21 *Hastings Int'l & Comp. L. Rev.* 241, Winter 1998.
- Stephen Seabrooke/John Sprack, *Criminal Evidence and Procedure : The Statutory Framework*, Blackstone Press Limited, 1996.
- T. M. Honess, "Juror Competence in Processing Complex Information : Implications from a Simulation of the Maxwell Trial", *Crim. L.R.* 1998, NOV, 763-773.
- T. M. Honess/M. Levi/E. A. Charman, "Juror Competence in Serious Frauds since Roskill : A Research-Based Assessment", *J.F.C.* 2003,11(1), 17-27.
- William Forsyth, *History of Trial by Jury*, 2nd ed., The Lawbook Exchange, Ltd., 1994.

132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통권 제72호, 2007 · 겨울호)

Curtailment of the Scope of Criminal Jury Trial in England and Wales

Kim Dae-seong

(Inha University BK21 Inha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 Education
Project Team, Post-doctoral Researcher, Ph.D. in Law)

The jury system was firmly established as a part of English legal procedure by the twelfth century. All cases of serious crime and most lesser offenses were tried by jury up to the early nineteenth-century England. However, since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magistrates and the accused have been given the choice between trial by the magistrates and trial by jury in some cases and the scopes of such cases and summary cases have been extended. And recent statutes also allow trial by judge alone in the Crown Court in some cases such as a serious or complex fraud case. As a result, the scope of criminal jury trial in England and Wales has been curtailed by much. English juries actually decide only around 1 per cent of criminal cases today. The primary factors of this tendency is probably expensiveness of jury trials and concerns regarding juror competence. This article attempts to acquire som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contents and primary factors of the tendency in England and Wales.

주제어 : 영국배심제도, 형사배심재판, 배심제도의 개혁

Keywords : English Jury System, Criminal Jury Trial, Reform of the
Jury